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범죄 이첩 후에도 수사처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 보유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58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7. 25.
3. 회 부 일: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영장의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 ② (생략)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만, 「검찰청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이첩한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또
는 제201조의2에 따른 체포영
장 · 구속영장의 청구

2.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 · 수색영장 또
는 검증영장의 청구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기 및 유지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찰청법」 제4조 및 제5
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제4항
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
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
도록 회신하여 다른 수사기관
에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
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해
당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직무
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또
는 제201조의2에 따른 체포영

	<u>장 · 구속영장의 청구</u> <u>2. 「형사소송법」 제215조에</u> <u>따른 압수영장 · 수색영장 또</u> <u>는 검증영장의 청구</u> <u>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u> <u>제기 및 유지</u>
--	--

2. 검토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3조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보유함.¹⁾

한편, 공수처법 제24조²⁾에 따르면 공수처 처장(이하 “처장”)이 다른 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카. 검찰총장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수사대상인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제식구감싸기”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처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수처가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권한 부여가 공수처의 설립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4조에 따르면, 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 직접 수사 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통한 수사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사건 이첩 후에도 최종적인 공소 제기 여부를 수사처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첩가능한 수사기관을 제한하거나 이첩에 대한 거부나 기관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또한, 공수처법 제47조³⁾는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안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직접 수사를 실시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⁴⁾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같은 법 제245조의8⁵⁾에 따른 재수사요청 등의 권한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독립하여 수사하기 위

3)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4)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해 설치되었고, 공수처법 제3조제2항은 공수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⁶⁾

이러한 설립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영장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 관련 지휘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 및 수사기관간 견제·균형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수처가 관여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견제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공수처법 제24조제1항⁷⁾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은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기구

6)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7)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아니라는 점, 이첩은 수사의 효율과 집중을 위한 제도라는 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직접수사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가 영장청구 및 공소 관련 직무 등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이첩·회신한 후에도 직접 수행할수도 있도록 수사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한정적 수사인력의 낭비와 비효율, 수사재량의 과도함, 공수처의 선택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공수처의 당초 설립취지, 다른 수사기관간의 관계, 수사재량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에 있어 선택이 미칠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 공수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수사 주체 또는 권한, 수사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청구,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등 다른 법률상의 강제수사 권한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① 검찰, 경찰 및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반부패수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형사사법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점, ③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및 직무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④ 현행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개정안 조항은 처장이 수사처검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여 공수처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3